

DESIGN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꾼다

# 2012 디자인 법률자문·분쟁조정 사례집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2012 디자인 법률자문·분쟁조정 사례집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목차

<b>Chapter 1. 배경</b>	6
국내 디자인산업의 현 위치	8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	10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입안	11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정책의지	11
관련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수립	12
대내외 디자인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분쟁조정위원회) 입안 절차	13
<b>Chapter 2. 공정거래 환경조성</b>	14
2.1 2012디자인법률자문사례	15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16
법률자문 사례	18
2.2 2012디자인분쟁조정사례	33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4
사회적 반향	38
분쟁조정 현황	39
분쟁조정 사례	40
부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47
<b>Chapter 3. 디자인기업 운영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b>	54
3.1 디자인기업을 위한 노동법	55
I. 임금과 용역료	56
II. 통상임금	56
III.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	60
IV. 평균임금	62
V. 연차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휴가	63
VI.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64
VII. 주요 고용지원제도	65
VIII. 청년인턴제도	68
3.2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69
I. 디자인보호법	70
II. 상표법	71
III. 저작권법	74
I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77
V. 특허법	78
VI. 지재권 침해 해결	78
VII. 디자인 분쟁사례	82

# Chapter 1

배경

# 1

국내 디자인산업의 현 위치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입안

# 국내 디자인산업의 현 위치

201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디자인산업의 규모는 총 7조900억원으로 지난 2008년도 5조2,312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하여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의 확대는 대기업 등 일반회사가 디자인에 투자한 금액이 3조3,476억원에서 4조3,687억원으로 1조원, 정부 공공기관의 투자액이 2,230억원에서 3,422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주도하였고 국내디자인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디자인기업<sup>주1)</sup>의 매출액은 1조6,613억원에서 1조9,596억원으로 3,000억원이 채 못 되는 금액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1) 전문디자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따라 디자인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디자인전문회사라고도 함.

표 1-1 국내 디자인산업 규모 ('04~'10)

구분	'04	'06	'08	'10
디자인산업 규모 (GDP 비중)	6.2조원 (0.80%)	6.8조원 (0.80%)	5.2조원 (0.51%)	7.1조원 (0.66%)
일반업체 디자인투자	5.4조원	5.9조원	3.3조원	4.4조원
전문디자인기업 매출액	7,815억원	8,848억원	16,613억원	19,596억원
공공부문 디자인투자	-	665.9억원	2,230억원	3,422억원

더구나 디자인관련 기업<sup>주2)</sup>의 경우 2008년도 관련 기업의 수가 2만2,684개사에서 2010년도 기준 2만7,077개사로 4,400여개사가 증가한 추세를 감안 시 업체의 증가비율 보다 매출의 증가비율이 낮아 실제 개별적인 디자인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디자인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6억4,824만원 이였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9,152만원에 불과하여 평균적인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이 14.1%로 서비스업중 평균 16.1% 보다 낮고 교육서비스업(47.9%), 미장원(40.2%), 피부관리실(33.3%) 등 개인서비스업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2) 디자인관련 기업 : 디자인 활용기업과 전문디자인기업을 총칭 디자인 활용기업(디자이너 고용 또는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 및 신제품 출시, 디자인변형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

전문디자인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0년 기준 5.48명으로 직원이 2~4명에 불과한 전문디자인기업이 전체의 46.2%이상 차지하고 있어 일정규모를 갖춘 기업형 전문디자인기업이 거의 없는 관계로 고용이나 근무 환경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디자인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5.48명 가운데 1.25명은 1년 이하 비정규직이며, 디자이너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06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0년 기준으로 디자인학과 졸업생 2만5,276명 가운데 1만1,304명만 취업을 하여 취업률은 4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표 1-2 국내 디자이너 고용 현황 ('04~'10)

구분	'04	'06	'08	'10
디자이너 고용규모	10.2만명	9.4만명	5.4만명	12.3만명
일반기업 고용 디자이너	93,153명	86,462명	46,479명	89,441명
전문디자인기업	8,509명	7,443명	8,108명	16,557명
공공부문	-	-	-	1,558명
1인 창업기업 프리랜서 등	-	-	-	15,440명

※ 자료출처 :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

## 2012.1차 조사결과

2011년도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피해신고센터」에서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도 4월까지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61%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주요 분쟁 대상은 대기업이 34%, 중소기업이 42%로, 그 결과 기업당 연평균 2건, 연간 2,000만원~1억원(43%)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추가비용 없이 별도의 작업을 요구 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연장, 최종 디자인개발 결과물 외에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받은 디자인 프로젝트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피해 기업들에게는 시안 제작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와 같은 물질적 손해를 당하게 되지만, 디자인용역 계약 전에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로 인해 법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환경은 여타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서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환경에 따른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업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멍들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기업들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신음하면서도 일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피해신고센터 조사에서는 피해 기업 중 60%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를 감수 한다.' 고 대답하였으며 분쟁 대응에 나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력, 경제력 등의 역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1-1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SOS콜



그림1-2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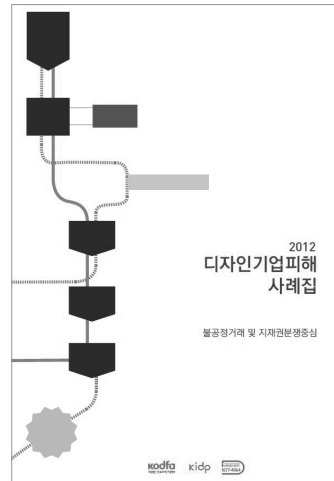


그림1-3 2012디자인기업피해사례집

#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입안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정책의지 표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국내 디자인산업계의 추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태용 원장의 부임(12. 3월)이후 디자인산업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원장이 직접 현안으로 챙기며 진흥원 동반성장실내에 디자인불공정거래·산업피해 전담 프로젝트매니저 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요 일간지·경제지 등 10회에 걸쳐 불공정 관행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디자인진흥원 전략회의 시 간부들에게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주지(13회) 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을 통하여 중소 디자인전문기업 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능력 함양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림1-4 맨 위부터 월간디자인, 디자인네트, 월간리더스 인터뷰

표 1-3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디자인산업 불공정관행 개선 최고경영자의 의지표현

<p>언론매체</p>	<p>전문지 4회                      - 디자인네트(6월), 월간디자인(7월), 뉴스월드(7월), 월간리더스(7월)                      경제지·일간지 10회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문화일보(5월)                      - 서울경제(5.21), 한국경제(5.31), 헤럴드경제(6.29), 서울경제(6.29) 등</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디자인용역불공정계약 개선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개발 등 제도적인 방안을 임기 내 꼭 달성 [디자인네트]</li> <li>◆ 디자인전문회사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 [월간디자인]</li> <li>◆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용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착화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든 상황 [월간리더스]</li> <li>◆ We' ll tackle expanding the foundation of the design market to create avirtuous cycle by correcting unfair design practices [뉴스월드]</li> <li>◆ 이 원장은 "디자인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경제]</li> <li>◆ 이 원장은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중소기업이어서 일반적으로 낮은 용역 단가를 책정 받게 되는 등 종속적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한국경제]</li> <li>◆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선 "디자인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고 디자인진흥법을 고쳐서 디자이너들이 금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헤럴드경제]</li> </ul>



## 관련기관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수립

디자인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분야에서 이미 조직적, 제도적으로 힐링 솔루션을 구축한 관련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디자인진흥원의 현재 포지셔닝과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표 1-4 관련기관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 추진

구분	추진내용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상기관 선정 및 방문·업무협의</li> <li>◆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상호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li> </ul>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찬 릴레이 방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디자인진흥원 내부 추천(칭찬)으로 1차 대한상사중재원 벤치마킹</li> <li>- 대한상사중재원 추천(칭찬)으로 2차 한국콘텐츠진흥원 벤치마킹</li> <li>-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칭찬)으로 3차 영화진흥위원회 벤치마킹</li> <li>-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칭찬)으로 4차 한국인터넷진흥원 벤치마킹</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th> <th>실태조사</th> </tr> </thead> <tbody> <tr> <td>대한상사중재원</td> <td>경영기획팀(7.3), 공정거래 제도개선</td> </tr> <tr> <td>한국콘텐츠진흥원</td> <td>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7.4, 8.1), 분쟁조정위원회</td> </tr> <tr> <td>영화진흥위원회</td> <td>정책센터(8.8),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td> </tr> <tr> <td>한국인터넷진흥원</td> <td>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8.10)</td> </tr> </tbody> </table>	기관	실태조사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7.3), 공정거래 제도개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7.4, 8.1), 분쟁조정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센터(8.8),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8.10)
	기관	실태조사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7.3), 공정거래 제도개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7.4, 8.1), 분쟁조정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센터(8.8),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8.10)										



그림 1-5 영화진흥위원회



그림 1-6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내외 디자인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디자인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정책좌담회 형식의 회의를 통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부의 전문가,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심도 깊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간구하였습니다.

표 1-5 대내외 디자인전문가 자문회의 추진방법

구분	추진내용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 2012.7.11. 10:30~13:30, 한국디자인진흥원 7층 소회의실</li> <li>◆ 참석인원 : 내·외부 총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디자인피해신고센터장, 임정호 팀장</li> <li>- 내부전문가 : 원장, 사업본부장, 홍보실장, 동반성장실장, 성과관리팀장 등 7명</li> </ul> </li> </ul>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은 분명히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li> <li>◆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디자인업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후 3년 후에나 가능하리라 판단했으나 이태용 원장 부임이후 당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음</li> <li>◆ 디자인 불공정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용지원도 필요</li> <li>◆ 디자인 용역계약상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및 조정, 피해신고센터 운영</li> <li>◆ 디자인용역 공정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자인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디자인협회/단체별 표준계약서의 개발이 필요</li> </ul>



그림 1-7 디자인용역 불공정거래 대책회의 안내



그림 1-8 디자인전문가 자문회의

##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분쟁조정위원회) 입안 절차



그림 1-9 분쟁조정위원회 입안 절차

# Chapter 2

공정거래  
환경조성

# 2.1

2012

## 디자인법률자문사례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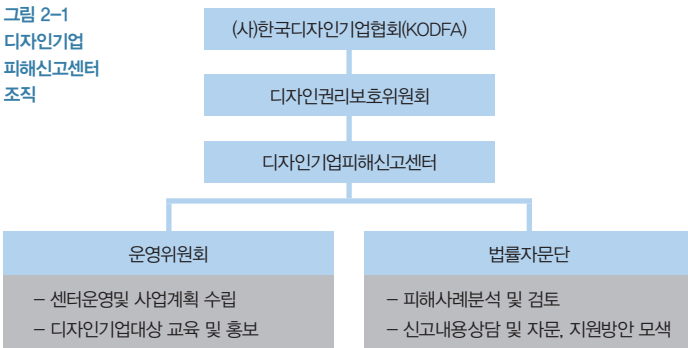
법률자문사례1~15

#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소개

디자인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디자인관련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는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피해예방교육 및 교육내용 홍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디자인관련 계약 전반의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림 2-1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  
조직



설립 2011년 7월  
 위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층  
 전화 1577-4964 / 팩스 02-3445-2314  
 홈페이지 www.designsos.co.kr  
 E-mail kofadnsn@hanmail.net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는 기존 변호사, 변리사의 자문 체계에서, 2012년 10월 회계사, 노무사, 유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등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법률자문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표 2-1 디자인법률자문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원장	김성천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협회장
위원	김우탁	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김종대	킬리파트너즈	대표변리사
	이경현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본부장
	이종우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전광출	제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효선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상담 신청현황〉

표 2-2 법률상담 신청현황

구분	접수 건	불공정거래피해	지재권관련피해	기타 (표준계약서문의)	법률상담 신청	법률상담완료
건수	21건	11건	9건	1건	19건	18건 (1건-진행중)

2012.10.10~2013.1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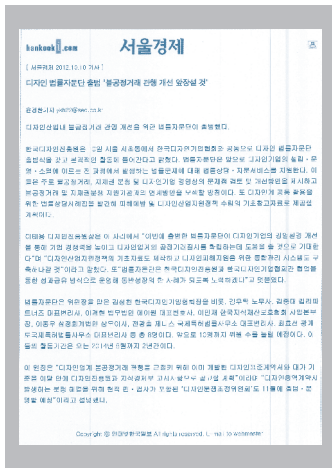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경제 기사



그림 2-3 디자인 법률자문단 출범식

## 피해상담 접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층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Tel 1577-4964 / Fax 02-3445-2314 / email kodfadsn@hanmail.net

홈페이지 www.designsos.co.kr

## 피해신고 절차



그림 2-4 피해신고 절차

# 법률자문사례

## 사례1

### 특허등록된 제품의 디자인 도용 피해 사례

#### 사건개요

신고 기업 A사는 서울 소재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자체 연구와 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자사의 디자인과 동일한 B사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A사의 제품은 특허청에 제품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A사는 특허 소송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A사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설립년도 : 2005  
소재지 : 서울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 법률자문

본 경우 특허는 물론 디자인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주신 A사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먼저, B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과정 없이 기업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이 잘 해결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민사상 집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집행 과정에 들어갈 경우, 권리침해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집행 과정에 들어갈 경우, 피해업체 A사는 특허증, 디자인등록증을 가지고 B사의 관할 경찰서에 가서 디자인 침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고발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서 침해기업을 소환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타 의견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근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전문가 감정서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 감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2

# 도용제품 상업적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의뢰 부탁

### 사건개요

피해를 신고한 C사는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사의 제품이 D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 도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D사가 직접 도용 제품을 제작, 판매, 수입을 한다면 법적 조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현재 D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와 소비자 간에 구매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C사는 이러한 D사의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C사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설립년도 : 2004  
소재지 : 서울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 법률자문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한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인보호법 6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모두 통틀어 등록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82조에서는 등록디자인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 역시 디자인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 프리랜서 작가의

### 포트폴리오 지식재산권 문제

#### 사건개요

오랫동안 디자이너 회사에서 근무한 뒤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1인 기업으로 근무를 하면서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들었던 디자인 창작물을 직장에 있을 때 만든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한다면 김씨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에게 포트폴리오 활용에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창작물이 유일한 재산이자 경쟁력인 디자이너들은 막상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간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기에,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막막해졌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에 한해 그 회사에 있을 때 만든 것임을 표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진 김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대처방안에 관해 자문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모 씨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1인 기업 디자이너)  
소재지 : 서울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의뢰

#### 법률자문

먼저,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적용법규가 다릅니다. 결과물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창작에 참여한 것으로 표시하여 단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해당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이지만 상업적 사용이 아닌 이상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사례4

### 서체 저작권 문제 상담

#### 사건개요

상담 신청 기업 E사는 오래 전에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F사로부터 며칠 전에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E사는 어느 법무법인 회사로부터 과거 프로젝트에 사용된 서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당시 사용한 서체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명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F사는 급하게 E사에 연락하여 서체를 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서체는 디자인 전체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E사가 시안에 제시한 일부분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완성작에도 추가되어 이미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E사는 서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피해신고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신고기업 E사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2006  
소재지 : 인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의뢰

#### 법률자문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서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 여부입니다. 이는 정식으로 서체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불법 다운로드 등에 의하여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E기업에서 자체 디자인한 서체를 사용하거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서체와 F 기업에서 디자인한 서체를 대비하여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 F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체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F사에서 서체를 사용할 경우,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례5

### 1인 기업가의 디자인 도용 사례

#### 사건개요

신고인 박 모 씨는 프리랜서 시각 디자이너로 의류기업과 크고 작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새 의류기업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박씨는 협업이라는 좋은 취지임을 고려하여 금액에 관한 언급 없이 의뢰를 수락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홍보 수단이기엔 금액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작업에 대한 크레딧은 반드시 제공하겠다는 기업 측의 약속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 되었고 결과물의 크레딧은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고인은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던 중에 본인이 작업했던 디자인물이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티셔츠에도 사용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은 사전에 연락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티셔츠나 기타 작업물 어디에도 신고인 박 씨의 디자인 제품이라는 크레딧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해당 의류기업에 항의를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달라서 자세한 사실을 몰라 죄송하다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박씨는 대응 방법으로써, 크레딧을 명시하고 본인의 작업을 이윤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대 기업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며 의류기업 측은 대답을 지연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지 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인 박 모 씨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2004  
소재지 : 서울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 법률자문

박 씨가 의류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결과물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만, 상표, 디자인으로 권리화(출원, 등록 등)를 하지 않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저작권의 보유, 동일한 저작물의 사용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가 있을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쌍방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사례6

### 거절한 시안의 디자인 도용 사건

#### 사건개요

신고 기업 G사는 H사가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의 포스터 디자인 회의에 별도의 계약서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안을 주고받는 PR 과정에서 G사는 H사의 요구와 방향성에 맞춰 디자인을 제시했지만 이후 F사로부터 타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G사와 H사의 거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G사는 H사의 완성된 디자인을 보게 되었는데, 완성작이 G사가 제시했던 시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완성작은 H사와 타 업체가 개발하여 제작한 것으로, 메인 비주얼의 컨셉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고, 포스터 속 모델의 의상이나 각도 등에 큰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G사는 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고민 끝에 피해신고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신고기업 G사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설립년도 : 2004  
소재지 : 서울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 법률자문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닌 아이디어나 컨셉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G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G사와 H사의 포스터)는 구도나 인물, 색상 등이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 협의 시 제공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보호의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별도 체결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피해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사례7

# 북디자인 및 편집디자인비 미지급건에 대한 피해 신고

### 신고내용

시각디자인 전문 기업인 I사는 J사와 로고디자인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이미 시안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거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따로 비용 관련 약정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J사 측의 피드백에 따라 3차에 걸쳐 디자인 수정을 하며 최종 마무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J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하더니 일정 시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I사는 더 이상 상황을 지체할 수 없기에 비용 지불 계획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J사 쪽은 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대답을 회피하였고, 이에 I사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I사는 J사를 상대로 소액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신고센터의 자문을 받아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입장 차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은 I사는 이번에 법률상담 서비스를 다시 신청 하게 되었고,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 법률자문

디자인 비용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구두약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결국 상식과 관행에 기초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업계에서 총 디자인비용 중 시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관행이나 상식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대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신고기업 I사**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1998**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에**  
**피해발생**

## 사례8

# 진행 지연과 비용 미지급에 관한 피해 신고 A

### 사건개요

신고 기업인 K사는 L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체결은 하였지만 선금 30%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L사가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진행이 예정보다 1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L사는 일방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디자인을 다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이미 최종 디자인까지 결정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K사는 이러한 L사의 대응이 무리한 요구임을 호소했지만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사는 현재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L사의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고 진행을 포기하면 프로젝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까봐 걱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시급함을 느낀 K사는 급하게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한 작업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문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K사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설립년도 : 2007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 진행 중에  
피해발생

### 법률자문

신고내용에 따르면 선금30%를 선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K사가 L사에게 업무수행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70%는 K사가 약정한 업무를 완료하였는지에 따라 K사의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K사가 L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한다면 잔금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 사례9

# 진행 지연과 비용 미지급에 관한 피해 신고 B

### 사건개요

신고 기업 M사는 기업 N사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협력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진행이 조금씩 연기되더니 나중에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 대해 M사는 N사 측에게 해명과 함께 공식적인 공문을 요청했으나, 회장 미결재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서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M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해졌습니다. 합의 하에 제안을 선정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순 파기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싶은 M사는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알게 되었고 법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M사**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2004**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 진행 중에  
피해발생**

### 법률자문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계약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 후 여러 가지 검토 및 의논 끝에 계약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 후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여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것이라면,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10

### 진행 지연과 일방적

### 프로젝트 취소에 대한 피해 신고

#### 사건개요

신고인 O사는 기업 P사로부터 2가지 디자인 개발을 의뢰 받았습니다. PT를 무사히 마친 뒤 O사의 시안이 채택되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O사는 선수금 30%를 받고 디자인 개발을 시작하여, 여러 번의 피드백 교환과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첫 번째 디자인 최종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작업 역시도 여러 번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P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샘플 작업 요청으로 인해 작업 진행이 점점 길어져 O사는 곤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P사의 이러한 요청이 O사측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였지만, 앞으로의 기업 관계를 고려하여 10여회 인쇄 샘플 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최종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P사는 디자인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신고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O사  
전문분야 : 패키지디자인  
설립년도 : 2000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신고내용을 살펴본 결과, O사와 P사는 디자인개발계약에 따라 양 사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 끝에 품목 모두를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P사에게 전달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P사가 시안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O사를 상대로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11

### 결재 미처리와

### 디자인 소유권 정리에 대한 문의

#### 사건개요

신고인 Q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R사는 일본의 다른 회사와 함께 무역 거래를 맺고 있었습니다. Q사의 담당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결재 처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Q사의 제품디자인 원본은 아직 R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Q사는 Q사와 R사 사이의 디자인 소유권이 정확하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기업 Q사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2008  
소재지 : 부산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디자인 소유권은 디자인용역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디자인한 측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다가 계약에 따라 완성품이 발주자에게 양도되면 이와 동시에 디자인 소유권도 발주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사의 경우 아직 설계도면을 클라이언트사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 소유권은 여전히 귀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12

### 소송진행중 수정신고에 관해 제출해야할 자료에 대한 자문 의뢰

#### 사건개요

신고인 S사는 개발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개발비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던 중, 세금계산서를 증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고사항 중 착오를 고치기 위해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한 것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정신고가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는 판사의 판단에, 다시 자료제출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사의 판결에 맞게 증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자문을 얻을 필요성을 급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신고기업 S사  
전문분야 : 패키지디자인  
설립년도 : 2001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세금계산서 수정신고가 개발비청구권의 포기합의가 아니라는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납품한 건에 대해 개발비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13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

#### 사건개요

신고인 T사는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1억여 원이 있는데 상대기업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아직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T사는 대금 지급 기간을 앞당기고 싶었고, 이를 상대기업에게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지급 명령 신청에 관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신고기업 T사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설립년도 : 1981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2주 후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제 채권의 변제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D사가 7월 약속한 기일까지 확실히 지급한다면 지급명령은 무의미한 절차이겠지만, 만에 하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것이 훌륭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14

### 납품 대금의 당사자 증명에 관한 의뢰

#### 사건개요

신고인 U사는 기업 V사의 의뢰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V사는 디자인이 완료된 제품을 기업 W사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U사는 V사의 요청에 따라 따로 대금을 받지 않고 먼저 W사에게 납품을 하였습니다. 거래가 모두 끝난 후 U사는 W사를 찾아가 납품 대금을 받으려 했지만 V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V사를 찾아가자, V사 역시 책임을 미루며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간 입장에 처한 U사는 V사와 W사와 모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급에 관해 요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게다가 W사는 중간에 폐업을 하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V사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U사  
전문분야 : 패키지디자인  
설립년도 : 2000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본 건의 핵심은 포장재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U사가 W사에 납품하였고, W사에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W사가 당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품계약의 핵심요소인 계약의 목적물과 수량, 대금을 정한 것을 U사와 V사였고, 포장재가 최종적으로 납품된 곳도 W사를 거쳐 V사였다면 실질적으로는 V사를 당사자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따라서 U사는 V사를 상대로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15

### 추후 용역에 대한

### 비용 미지급에 관한 피해신고

#### 사건개요

신고기업 X사는 Y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달마다 용역에 대한 비용이 입금되는 시스템이었는데, 1차 비용이 입금이 된 후 추후작업에 대한 비용이 입금이 안 되어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차 작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요청 내용과 그동안의 핸드폰과 이메일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Y사의 본사 측과 이야기해본 결과 Y사는 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관리하고 있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힘들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100만원 대의 비용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X사는 이를 소송으로 처리하기에는 소비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 문의할 곳을 찾고 있던 X사는 피해신고센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기업 X사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설립년도 : 2005  
소재지 : 서울

프로젝트가 끝난 후  
피해발생

#### 법률자문

양 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송에 의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소액소송절차로 전환되고, 1~2회의 재판을 거쳐 조정 또는 판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또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부동산, 동산, 채권이 있는데요, 본건과 같은 소액의 채권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 2.2

2012

## 디자인분쟁조정사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반향

분쟁조정 현황

분쟁조정 사례

부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디자인분쟁조정 제도

최근 디자인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기에 디자인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디자인 분쟁조정 제도는 디자인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동법 제10조에 근거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통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로 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1월 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조정문의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63-954)

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사업실 공정거래팀 김원중 부장, 손성호 과장

Tel 031-780-2101, 2104

Fax 031-780-2106

Email [wjkim@kidp.or.kr](mailto:wjkim@kidp.or.kr) / [sicarius@kidp.or.kr](mailto:sicarius@kidp.or.kr)

표 2-3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단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법학계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조계	서태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형사6부)
	이광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경현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
	최기록	김&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분야 대표변호사
변리사	이인종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사	노미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장
회계사	임종희	신화회계법인	이사
유관기관	김경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정책부 부장
디자인교수	김현성	한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구환영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인치호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반영환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디자인전문가	김득주	디토 디자인	대표이사
	박노섭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디자인단장



그림 2-5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리본커팅



그림 2-6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 조정절차

### ◆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디자인용역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운영하는 디자인피해 신고센터의 신고 또는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며 피 신청인 (상대방)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송부됩니다.

### ◆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 조정 전 합의권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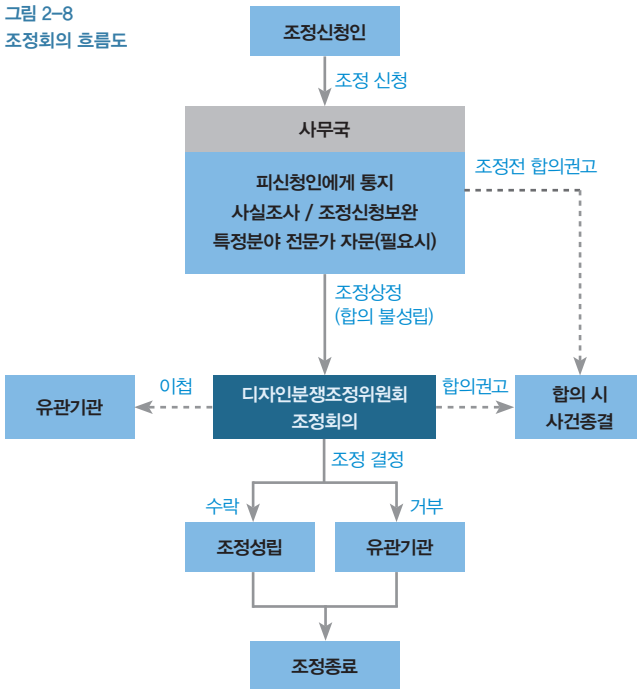
◆ 조정의 성립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은 조정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2-8 조정회의 안내

그림 2-8  
조정회의 흐름도



사건 보고



신고인 답변



그림 2-9 조정안 제시 절차

# 사회적 반향

##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국내 디자인산업계의 주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기업 피해실태조사에 대하여는 서울경제에서 특집기사로 3회에 걸쳐 디자인불공정 행위 개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 서울경제 특집기사 「동반성장 사각지대 디자인」

- ◆ 7.19 “(상) 도 넘은 불공정 거래, 대금 때먹고 지재권 빼앗고”
- ◆ 7.20 “(중) 방치된 창조산업, 영세·저임금·고용불안...미래가 없다”
- ◆ 7.24 “(하) 핵심 지식산업으로 키워라, 예산 늘리고 법률서비스·표준계약서 마련 시급”



그림 2-10 서울경제 특집기사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은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기대를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매체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디자인분쟁 해결사가 나섰다’, ‘억압받는 디자인 중소기업 구제한다’ 와 같이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 분쟁조정 현황

## 디자인분쟁조정 신청현황

표 2-4 디자인분쟁조정 신청현황

구분	조정신청	조정완료	조정진행	유관기관 이첩	조정거부 (소송사건 등)
건수	9건	3건	2건	1건	3건

2012. 11. 6 ~ 2013. 1월말

2012년도 11월에 출범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도 1월말까지 9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 5건에 대하여 진행완료 또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에 이첩 1건, 그리고 분쟁조정 이전에 이미 소송 중인 사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조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신청인에게 사유를 설명 드리고 거부처리 하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2005년도 출범을 하였고 그해년도 분쟁조정 신청은 총 15건 이였으나 조정제도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조정신청 시 역 피해의 우려를 해소 하였고 그 결과 2006년도에 26건, 2007년도에 39건, 2008년 42건으로 지속적인 조정신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의 경우 1995년에 설립 이후 17년간 받은 조정신청은 한해 평균 6건 이였습니다. 앞의 양 기관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2012년도 11월에 출범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실적은 디자인산업에 잠재되어있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련업계의 해소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사례

## 사례1

### 1. 사건개요

신청인 A사는 시각분야(패키지디자인포함)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중소기업인 B사로부터 「△△△」 브랜드디자인 및 선물세트(내지함 3종, 외지함 3종, 쇼핑백 3종)에 대한 패키지디자인개발을 의뢰 받았습니다. 개발금액은 21,945,000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2011. 8. 29~2011. 10. 10으로 2011년 8월 29일에 정식으로 양사 대표자의 날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계약의 체결 후 B사로부터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6,580,000원을 받았고 2011. 10월초에 개발 결과물을 인쇄교정 샘플 형태로 B사에 제출 하였으나 B사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정과 재수정이 되풀이 되며 2012. 7월 최종적으로 A사는 B사로부터 디자인 결과물이 만족치 못하다는 이유로 잔금 15,361,5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2012년 11월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2-01  
조정방법 : 대면 조정  
사건명 : 중소기업체와 디자인전문 회사의 패키지디자인개발비에 대한 분쟁

###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 A사

신청인은 A사의 대표이사로서 B사와 체결한 디자인개발 건과 관련 2012. 1월초 B사 측에 수정 제시한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B사는 1종만 채택하고 나머지 2종은 재 시안 제작을 요구하며 개발완료 시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을 간주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2. 2. 20 수정된 2종에 대한 시안을 B사에 제출 하였으나 B사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는 대신 마지막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마무리 할 것임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B사는 2012. 7. 18 최종적으로 제출된 결과물 2종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고 사용도하지 않았기에 잔금지급을 거절 했다고 합니다.

나. 피신청인 : B사

피신청인 B사는 2011. 10월에 A사로부터 받은 디자인개발 결과물이 당사의 마케팅 이미지와 전혀 달라 A사의 창작력에 의문을 갖게 되며 보완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A사와 개발 계약을 체결한 디자인은 2012년도 설 시즌을 목표로 한 것을 시기가 중요하였고 결국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던 A사의 디자인시안 중 한 가지 디자인의 일부를 채택하고 색상조정, 인쇄교정, 샘플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바 디자인개발 실익이 없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A사는 계약종료 후 1개월 후 방문하여 기왕 하던 일이니 계속 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당시 B사의 담당자는 시즌준비를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진행은 무의미하다며 진행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7월 A사는 예정 없이 방문하여 결과물을 제시하였고 B사는 설 시즌의 기회를 상실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3. 조정절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준하여 A사의 분쟁조정신청을 피신청인 B사에 통보를 하고 B사로부터 분쟁조정 신고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였으며, B사의 답변서에 대한 A사의 조정 전 합의여부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2012. 12월 초에 개최하여 그 결과를 12월 중순에 양 당사자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33일 만에 조정을 마친 것입니다.

### 4. 조정부의 구성

본 사건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조정회의의 개최)에 근거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위원장으로 현직 부장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디자인과 교수가 포함된 5인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 5. 조정부의 의견

개발기간 중 제시된 디자인시안에 대한 B사 측의 거부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두 개의 시안에 대한 개발진행과정도 종료시점의 명확성 등이 분명치 않습니다.

B사 측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종료일 2011.10.10.이 지나는 순간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종료를 선언했어야 하며 그 이후에 개발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다면 오히려 기간 외 추가비용을 지불 하거나 아니면 계약 종료시점에서 명확한 결과물에 대하여 지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계약 종료시점에서 명확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 없이 위탁자의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A사가 제시한 디자인 1종에 대한 B사의 부분 채택 및 수정사용은 2차 창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6. 조정결과

본 사건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황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면에서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높으나 소송에 의한 비용적인 측면, 변호사 비용, 소송에 패하게 될 경우 상대방 배상액 등을 감안 시, 청구금액 15,361,500 원 중 조정금액으로 10,000,000원을 제시하며 조정 성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B사가 A사에게 지급하되 이 금액은 그간의 이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사에서 기개발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B사에게 양도했습니다.

## 사례2

### 1. 사건개요

고소인 A는 저작물 「○○○○○」에 대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에 담긴 각종 문양 또한 모두 창작물로서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도 고소인의 독점적 저작권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문양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에 담긴 문양들이 전통문양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창작성 및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 담긴 문양을 사용한 사람들이 고소인과 문양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무단사용의 경우 사후적으로 합의한 사실, 고소인이 작성한 문양스케치 등에 따르면, 고소인의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투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문양의 창작성 및 독점적 저작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2-02  
조정방법 : 서면 조정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회

### 2. 쟁점사항

동 사건의 쟁점사항은 고소인 A가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에 담긴 문양들 중 우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문양들이 전통문양을 토대로 고소인 A가 창작한 창작물인지 여부와 이에 따라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여부였습니다.

### 3. 조정절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1조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2012. 12월에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조정방식으로 2013. 1월 초에 개최하여 그 결과를 1월 중순에 회보하였습니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30일 만에 조정을 마친 것입니다.



#### 4. 조정부의 구성

본 사건은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위원장으로 특허청에서 근무한 경력의 변리사, 디자인과 교수, 진흥원 전문가 포함된 4인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 5. 조정부의 의견

고소인 A의 편집저작물 「○○○○○」에 기재된 문양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수정·정리된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다소의 디자인적 변형이 가미된 2차적 창작물로 판단됩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전통문양의 선택과 패턴의 변화도 2차적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저작물의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의 침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 디자인의 요소인 형상·모양·색채의 관점에서 창작여부를 판단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자료의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6. 조정결과

디자인보호법적 측면에서 볼 때, 글자체의 개별적 창작여부를 심사 후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존속기간 15년)이 아닌 저작권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인 문양 전체를 편집 저작물로 등록하고 보호를 받기에는 디자인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사례3

### 1. 사건개요

신청인 A사는 디자이너가 대표이사면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메탈소재 휴대폰 케이스로 사전에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하고 타인의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경고를 게재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A사는 자사가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생산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하여 피신청인 B가 온라인쇼핑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A사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중국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통보하고 제품 판매의 중지를 요구 했지만 B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한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B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판매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3-01  
조정방법 : 조정취하 및 소송제기  
사건명 : 디자인권 침해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따른 분쟁

### 2. 조정개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1조(사실조사) ②항에 근거하여 조정 전 디자인법률자문단에게 피신청인 B가 A사 제품 디자인권을 침해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2. 12월말 디자인법률자문단은 A사 제품 디자인권을 피신청인 B가 침해 했다는 자문결과를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A사에게 결과안내 및 조정개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가 A사에게 안내한 개시절차는 피신청인 B에게 조정개시를 통보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답변서에 대한 A사의 수용이 있으면 조정 전 합의가 되지만 수용을 거부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경우 쟁점사항인 피신청인 B측이 즉각적으로 제품판매를 중지하고 그간에 발생 수익을 기준으로 A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조정 안내였습니다.

#### 4. 조정취하

신청인 A사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 안내에 대하여 2013. 1. 4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사의 문의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참고적으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2013. 1. 9 신청인 A사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내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방법을 결정 할 수 있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A사의 판단은 분쟁조정을 거쳐 피신청인 B가 제품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함으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지만 좀 더 공격적인 자사제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하여 형사고발 절차를 통한 사례를 만들고 그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디자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A사는 상기 사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5. 참고 –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82조(침해죄) 1항에 근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을 하고 이 경우 피신청인은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구체적인 디자인권 침해사실이 아님을 증빙하지 못하면 검찰로 인계되어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는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인은 다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디자인산업에 관한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진흥원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제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흥원의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디자인 및 디자인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6.4급 이상 공무원(교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자인 육성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동반성장실에 사무국을 둔다.
- ⑥ 조정위원회는 디자인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분과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인, 3인, 5인, 7인 위원회로 구성한다.

### 제4조 (조정위원회의 직무)

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디자인 용역계약의 분쟁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디자인 용역계약의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3.조정규정의 제정 및 개정 4.분쟁조정 사례 및 개선안 발간 5.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조정의 신청 및 절차의 개시

### 제5조 (조정 신청)

- ① 디자인 계약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③ 사무국은 신청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임장, 기타 서류의 원본제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이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접수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조정외 거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조정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당사자 불분명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8.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피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9.신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10.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11.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디자인 관련 분쟁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12.신청인이 조정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답변서, 조정안, 조정서 등을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거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문서의 통지 및 송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 (조정외 취하)

-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한 사건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취하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조정절차 진행 중 사무국이 답변서를 수령하기 전에 피신청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조정외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조정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

1.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조정절차의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3.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거나 당사자와의 연락이 5일 이상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닿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5.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사건의 종결사실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정결정 전 사건의 처리

### 제9조 (답변서의 제출)

①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국은 피신청자에게 신청서 부분과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분쟁조정접수통지 및 조정참여권고서, 기타 조정안내서류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에 응하는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1.조정에 응하겠다는 취지 2.신청인의 신청요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3.분쟁해결을 위한 요청사항

③ 답변서를 제출하는 피신청인은 조정참여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사무국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한 경우 답변서의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문서의 통지 및 송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 제10조 (조정전 합의 등)

-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수용하거나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합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회의에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실조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 등 (이하 "사실조사" 라 한다)을 위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술청취 2.당사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요구  
3.시험검사,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과의 자문의뢰 4.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요청 5.현장조사, 사진촬영 등 기타 적절한 방법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회, 감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등에게 조사목적, 조사 내용, 조사기간 등을 조사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사실조사 과정 중에 발견된 위법, 위규 사항이 있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진흥원 내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은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장 조정회의의 개최 등

#### 제12조 (조정회의의 개최)

- ① 위원장은 합의의 권고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구성원을 지정함에 있어 조정위원이 속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3조 (조정부의 구성)

- ① 조정부는 제3조의 ⑥항, ⑦항의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중의 1인을 조정장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장은 법률적 소양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조정의 경우 조정위원 1인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 (조정위원의 공정성)

-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정위원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 (조정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 지명서로 위원을 지명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 (당사자의 출석통지)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출석통지 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당해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및 기피절차 3.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제출 4.관련 증거자료 제출 5.당사자 불출석시의 조정절차

### 제17조 (당사자의 출석)

- ① 제16조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수권관계가 명시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위원장은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당해 사건의 사무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의에 불출석 예정인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조정기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자료의 요청)

- ① 위원회는 제11조의 사실조사결과를 사무국을 통하여 보고 받을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결과를 당해 사실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정회의의 참가신청)

- ① 조정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조정회의의 방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조정회의 참가신청을 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 (조정회의의 장소)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의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장 조정서의 발급 등

### 제21조 (조정안의 제시)

- ① 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로 하여금 수락여부를 결정할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정안 수락)

-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출석 등 기타의 방법으로 조정안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받은 후 7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위원장이 확인하여 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지연처리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차에 한하여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2012. 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반성장실 디자인불공정거래, 산업피해 전담 PM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무국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분쟁조정 신고서

2013년 월 일

◎ 신고인 정보

성 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주 소	(우편번호)		
피신고인 과의 관계			

◎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내용

사업자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내용			
주 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p>* 분쟁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또 이 행위로 인해 신고인이 입은 피해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십시오.</p> <p>* 신고내용 면이 모자를 경우 별지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p>		
증빙자료 첨부내역			



# Chapter 3

디자인기업

운영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

# 3.1

## 디자인기업을 위한 노동법

- I. 임금과 용역료
- II. 통상임금
- III.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
- IV. 평균임금
- V. 연차휴가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휴가
- VI.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 VII. 주요 고용지원제도
- VIII. 청년인턴제도

## I. 임금과 용역료

###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가' 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지배종속적 지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여부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2. 용역료의 정의

용역료는 실무용어로서 사업자 對 사업자 또는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한다. 금품의 성격이 용역료라면 임금이 아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II. 통상임금

###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 2.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임금항목 등

통상임금은 확정적으로 미리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과는 달리 시간급 등으로 산출이 되는데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임금항목 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1) 연장근로수당
- (2) 야간근로수당
- (3) 휴일근로수당
- (4) 연차휴가수당
- (5) 월차휴가수당
- (6) 주휴수당
- (7) 출산전후휴가수당
- (8) 해고예고수당
- (9) 최저임금의 위반 판단
- (10) 평균임금의 조정

### 3. 통상임금의 범위(고용노동부)

표 3-1 통상임금의 범위

판단기준 예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단기준 예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 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생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판단기준 예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Ⅲ.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

#### 1. 산입되는 임금

표 3-2 산입되는 임금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랭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 2. 산입되지 않는 임금

표 3-3 산입되는 않는 임금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IV. 평균임금

###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일급의 형태로 도출되는 특성을 지닌다.

### 2.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임금항목 등

상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임금항목 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1) 연차휴가
- (2) 휴업수당
- (3) 재해보상금
- (4) 퇴직금
- (5) 감급의 제재 수준

###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은 산정사유일 발생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나 그 3개월 기간 동안 무급이거나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총 8가지를 정하고 있다.

-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입사후 3개월)
-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3) 산전후휴가 기간
-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5) 육아휴직 기간
- (6) 쟁의행위기간
-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9)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 V.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휴가

### 1. 원칙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본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

### 2. 예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속년수가 2년미만이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유추해석하면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 기타금품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 3. 회계연도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 연도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할 또는 매월 1개씩의 연차를 누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입사연도 이듬해를 1년차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취업규칙에 이러한 방식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4. 연차수당과 퇴직금

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정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

### 6. 출산전후휴가

#### 가. 원칙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산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총 90일의 기간 중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예외 :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7.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VI.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표 3-4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 유	퇴직금 중간정퇴	퇴직연금 담보대출 (DC형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X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X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 Ⅶ. 주요 고용지원제도

###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지원금

#### 1.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①

##### 가. 지원요건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이고
-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 ③ 근로계약 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 ④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어야 한다.

##### 나. 지원수준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 첫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씩 지급한다. (11.1.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②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6개월간 40만원씩 지급한다.

#### 2.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②

##### 가. 지원요건

- ①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 ②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나. 지원수준

육아휴직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 3.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③

##### 가. 지원요건

- ①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 ③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나. 지원수준

- ① 육아휴직등 시작일(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
- ②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계획서 승인 후 지원

### 1.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이지만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지원요건

가.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① 유급휴가 + 훈련 또는 안식휴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② 교대제 도입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①새로 실시하거나 ②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③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나. 근로자수의 초과 증가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도입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 3. 지원수준과 한도

가. 증가된근로자수 1명당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 지원한다.(총 720만원)

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도입전월평균 근로자수의 30% 한도로 한다.

나.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하며 6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채용지원 ※ 계획서 승인 후 지원

### 1. 지원대상

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2. 지원요건

가.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2.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3.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인 사람

② 제품·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낮은 직위에 있는 직급을 의미함) 2. 아공계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3.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인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③ 기술·기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3. 지원수준

가.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한도)

나.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하며, 6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아니함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계획서 승인 후 지원

1. 지원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2. 지원요건

가.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1.기숙사 2.구내식당 3.사내 교육시설 4.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5.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6.통근차량

나.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다.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라.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3. 지원수준

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함)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나.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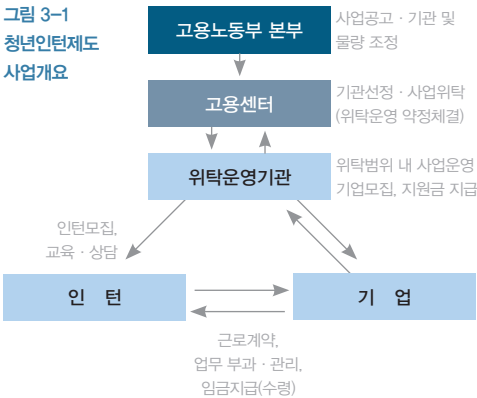
- ①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증가시 1천만원을 한도
②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증가시 2천만원을 한도
③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증가시 3천만원을 한도
④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증가시 4천만원을 한도
⑤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천만원을 한도



## Ⅷ. 청년인턴제도

### 1. 사업개요

그림 3-1  
청년인턴제도  
사업개요



### 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가. 고용노동부 본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인턴교육훈련(별도 전문기관에 위탁)

#### 나. 고용센터

- ① 운영기관의 신청접수(각 고용센터) 및 심의·선정(지방청고용센터)
- ②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③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④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및 인턴지원금 교부·정산·취소·반환
- ⑤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 ⑥ 인턴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반환
- ⑦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⑧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⑨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⑩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다. 운영기관

- ①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②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③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 ④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⑤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⑥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 ⑦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포함) 지급
  - ⑧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 <http://work.go.kr/intern> 에서 운영기관 조회 가능

#### 라. 실시기업

- ① 운영기관 알선 등을 통해 청년인턴 채용
  - ②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서(실시기업-인턴) 체결
  - ③ 멘토 지정, 유급휴가 직무훈련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 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3. 지원수준

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 50~99인 기업인 경우 최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나. 인턴기간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이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다.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50인 미만 기업 6월간 480만원 한도, 50~99인 320만원 한도, 100인 이상 3월간 240만원 한도)

본 내용은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위원이신 김우탁 노무사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우탁 (노무법인 원, labecono@hanmail.net)

# 3.2

##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 I. 디자인보호법
- II. 상표법
- III. 저작권법
- I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 V. 특허법
- VI. 지재권 침해 해결
- VII. 디자인 분쟁사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됩니다. 각각의 권리는 각자 고유한 보호실익과 보호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의 보호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권리의 내용과 보호방식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하, 각 권리별 특성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산업디자인, 의장권)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글자체를 포함함)
- ▶ 디자인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 디자인권의 보호 : 디자인 등록~15년(디자인등록출원~등록절차)
- ▶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 대한민국(외국에서의 디자인등록은 각 국가별로 별도출원하여 보호하여야 함)
- ▶ 제3자 이용방법 : 실시권 설정(라이선스)

디자인등록은 구체적인 제품에 구현된 디자인 결과물에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글자체 및 화상디자인에 대하여서도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화면상에 구현되는 아이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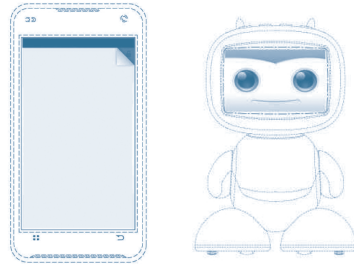


그림 3-2  
화상디자인의 예시

디자인등록의 종류는 대상물품에 따라 심사등록/무심사등록으로 구분됩니다. 디자인출원이 등록을 받으려면 방식적 등록요건과 아울러 실제적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실제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 출원일로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이 되면 보통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 1.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부동산, 설량 등과 같은 분상물,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예 :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1)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2)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호림, 색구분 즉, 무늬
- (3)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 3.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I. 상표법

**상표 (서비스표) :**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 냄새, 위치상표(사용자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가능)

▶상표등록요건 : 식별력이 있을 것, 타인의 선권리와 유사하지 않을 것,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표권의 보호 : 상표등록 ~ 10년(상표등록출원~등록 절차 갱신가능(반영구적))

▶상표권의 보호범위 :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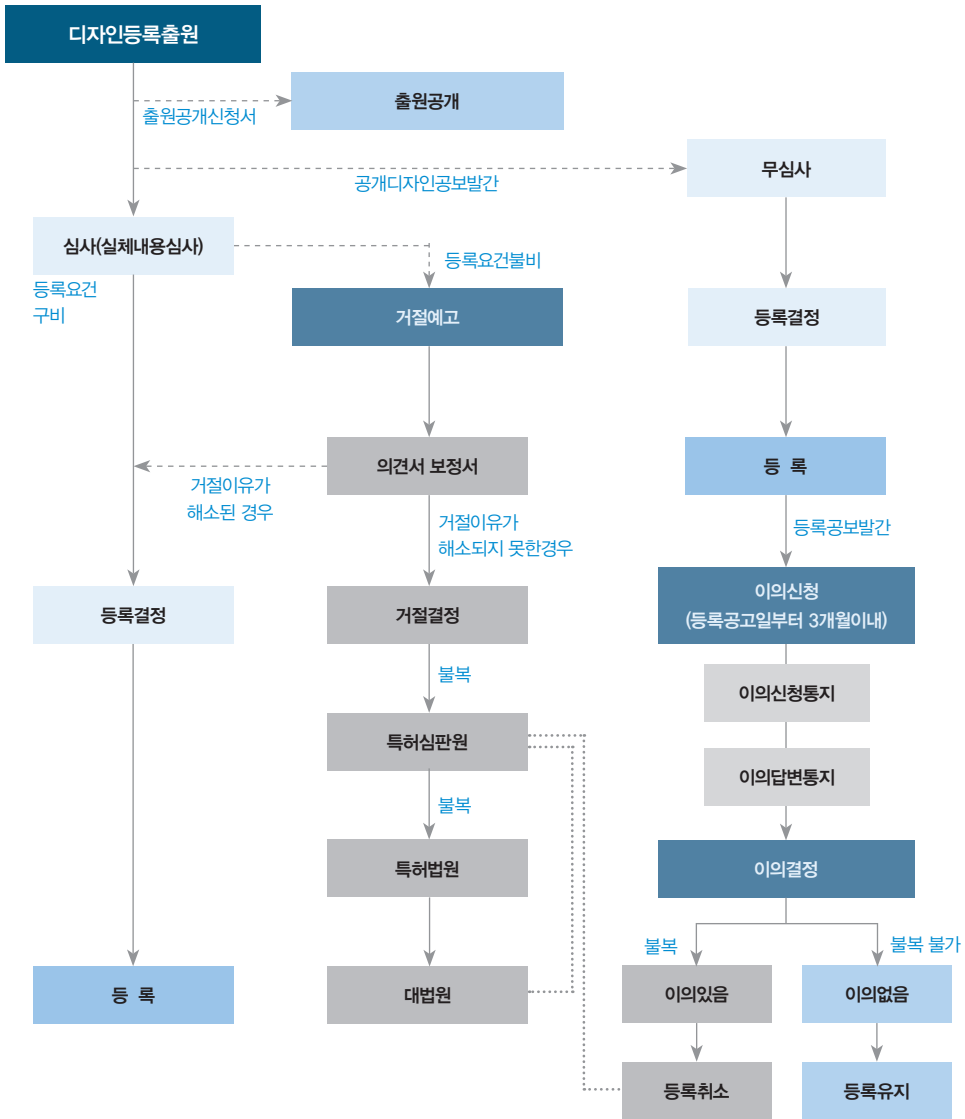
▶제3자 이용방법 : 사용권 설정(라이선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갤럭시S”, “옵티머스”, “아이폰”, “베가” 등은 핸드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문자상표입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TA와 관련하여 2011.12.2. 개정법에 따라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도 상표의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림 3-3 디자인 심사절차도



## 상표의 종류

### 1. 문자상표

“갤럭시S”, “옵티머스”, “아이폰”, “베가레이서”와 같이 한글, 한글상표, 한글과 영문 혼합상표 또는 “MICROSOFT”, “あい&ゆうき”와 같이 영문, 일문, 중문, 한자 등 외국어상표만으로도 출원 가능.

### 2. 도형상표

[캐릭터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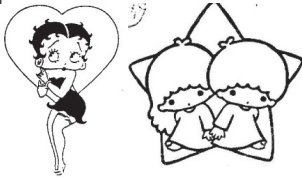


그림 3-4  
캐릭터도형  
예시

[심볼마크]



그림 3-5  
심볼마크  
예시

### 3. 기호상표



그림 3-6  
기호상표  
예시

### 4. 입체상표



그림 3-7  
입체상표  
예시

### 5. 기타 상표

“MGM 영화사의 사자울음소리”, “펩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 등 소리상표 또는 색채만의 상표, 냄새상표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점적인 사용에 의해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등록가능함.

## 상표 등록요건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청에서 방식심사 및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요건(식별력)과 주관적요건(타인의 상표와의 저촉여부)를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

가.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나.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다.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등을 표시하는 상표(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형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것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마.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총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B 등)

사.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등)  
※ 다만, 다, 라, 마, 바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타인의 상표와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수요자들이 대비되는 양 상표를  
보고 이를 혼동하여 하나의 출처로 인식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호등록이나 도메인이름과 같이  
선등록표장에 단순하게 숫자나 문자를 추가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과는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실무는 완전히 동일한 상표는 물론 칭호나 관념  
등이 유사한 상표, 다른 문자나 도형과 결합되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요부에서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도 유사상표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따라 타인의 상표와 외관(모양/  
APPEARANCE-상표의 겉모습), 칭호(발음/SOUND-상표를  
읽었을 때 나는 소리) 또는 관념(의미-MEANING-상표의 뜻)  
중 어느 하나가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 외관 유사 : HOP 과 HCP, 百花 와白花
- ◆ 칭호 유사 : NTERCEPTOR 와 인터셉터,  
COLLMAN 과COLEMAN, LYSOTAN 과 LOSOTAN

◆ 관념 유사 : 평화와 PEACE, 나비 그림과 BUTTERFLY  
또한 다른 문자와 결합된 경우에도 두 개의 부분이 분리되어  
하나로 약칭될 수 있거나, 결합된 문자가 고유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부분을 이루는 요부만을 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별력 있는 도형과 결합된  
경우에도 도형과 문자부분이 일체를 이루어 이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 되지 않는 이상 도형과 문자는 각각  
유사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STAR 와 SUPER STAR (유사) / KING 과 KINGTEX (유사)

## III. 저작권법

**저작권(Copyright)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 저작물의 종류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일신전속적)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저작권의 보호범위 : 대한민국 + 베른협약 가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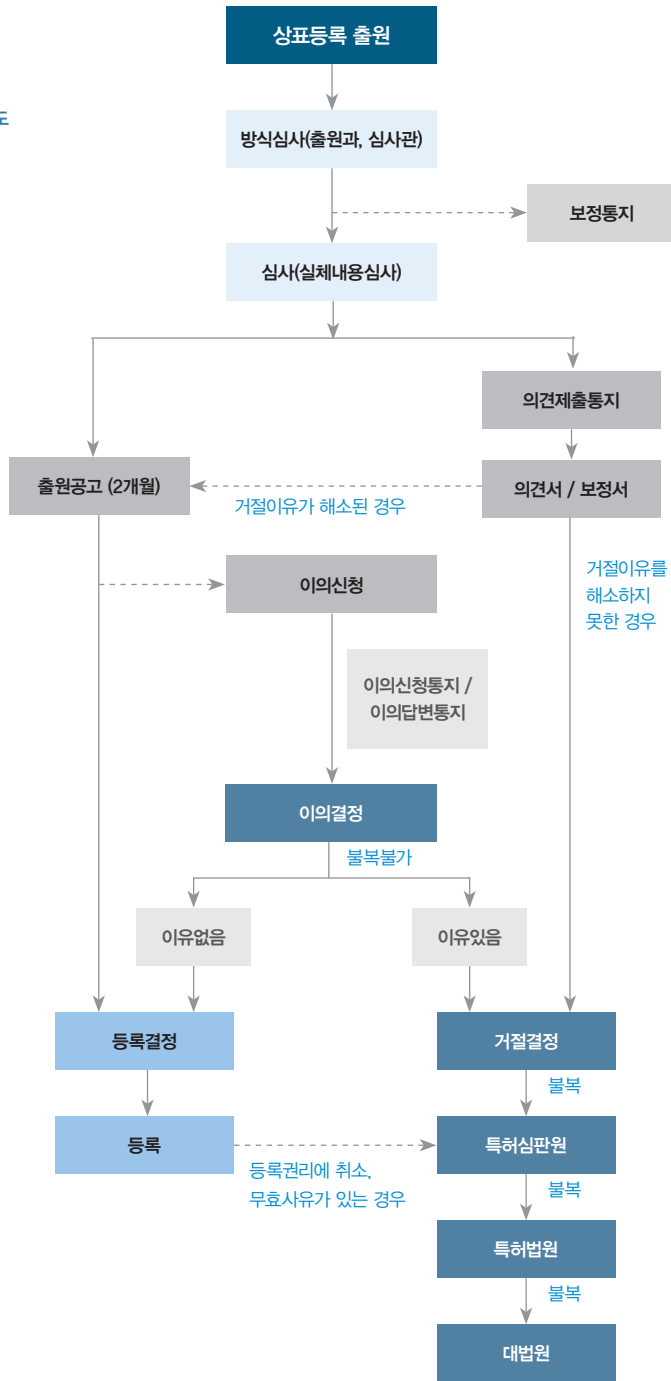
▶ 제3자 이용방법 : 출판권, 이용허락(라이선스), 공정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를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나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방식 (납본,  
기탁,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권리를 설정하여야 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와 달리  
베른협약 가입국에서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나 '물품과 분리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3-8 상표 심사절차도





## 1. 저작권의 내용

### 가. 저작인격권

-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나.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 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2.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가.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 나.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일신전속성).

### 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 I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 ▶ 부정경쟁행위 유형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품출처의 혼동유발(법제2조 제1호 가목)

-타인의 주지 저명한 영업출처의 혼동유발(법제2조 제1호 나목)

-타인의 제품형태 모방(법제2조 제1호 자목)

#### ▶ 지역적 범위 : 국내

▶ 제3자 이용시 제재 :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제3자의 무단이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제재하고 있음

\* 자목의 경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청구가능  
단, 창작일로부터 3년이내, 형사고소할 수 없음

전통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제재되는 행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나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물품의 형태가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출처 기능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를 모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출시되어 주지·저명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경쟁업자들에 의해 디자인도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분야에서는 해당 법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개정법에서는 타인의 제품형태 모방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형태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까지만 보호되며,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부경법상 형태모방에 대한 제재규정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데드카피 (dead copy) 행위에 대하여 부경법에의해 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품의 모방의 경우에는 민사제재와 더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한 형태모방(법제2조제1호자목)은 민사제재만 가능하고 형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이 출원 전에 공개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출원은 하였으나 아직 권리 취득 전이어서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침해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효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V. 특허법 (실용신안법)

###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 특허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 지역적범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따라서 외국에서의 보호는 각국별 출원진행(PCT국제출원 등)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나 아니나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특허는 기술적인 사상,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아이디어가 적용되어 나타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다양한 실시례가 발생하는 경우, 디자인등록대상은 그 실시례별로 각각 발생합니다.

최근 디자인 결과물들은 단지 제품 외관에 대한 미적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발명이라 할 정도로 디자인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기능구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최종 결과물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만으로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자인과 특허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용한 보호전략입니다.

## VI. 지재권 침해 해결

### 1. 증거확보의 필요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침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다음 침해자가 디자인을 침해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침해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구두 또는 전화나 팩스 등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고 간 내용들은 추후에 법적으로 그 사실과 행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두 경고를 받은 침해자의 경우 침해의 증거 인멸을 시도하게 되므로, 나중에 과거의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 놓아야 향후의 협상 또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 2. 증거수집 및 보존방법

증거를 확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 보존이라는 행위입니다. 즉, 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침해 소송 등에서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침해 소송의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장부의 제출 또는 침해품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검증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진이나 잡지 또는 거래관련서류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만일 인터넷상으로 제품 광고 및 판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서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림 3-9 특허출원 심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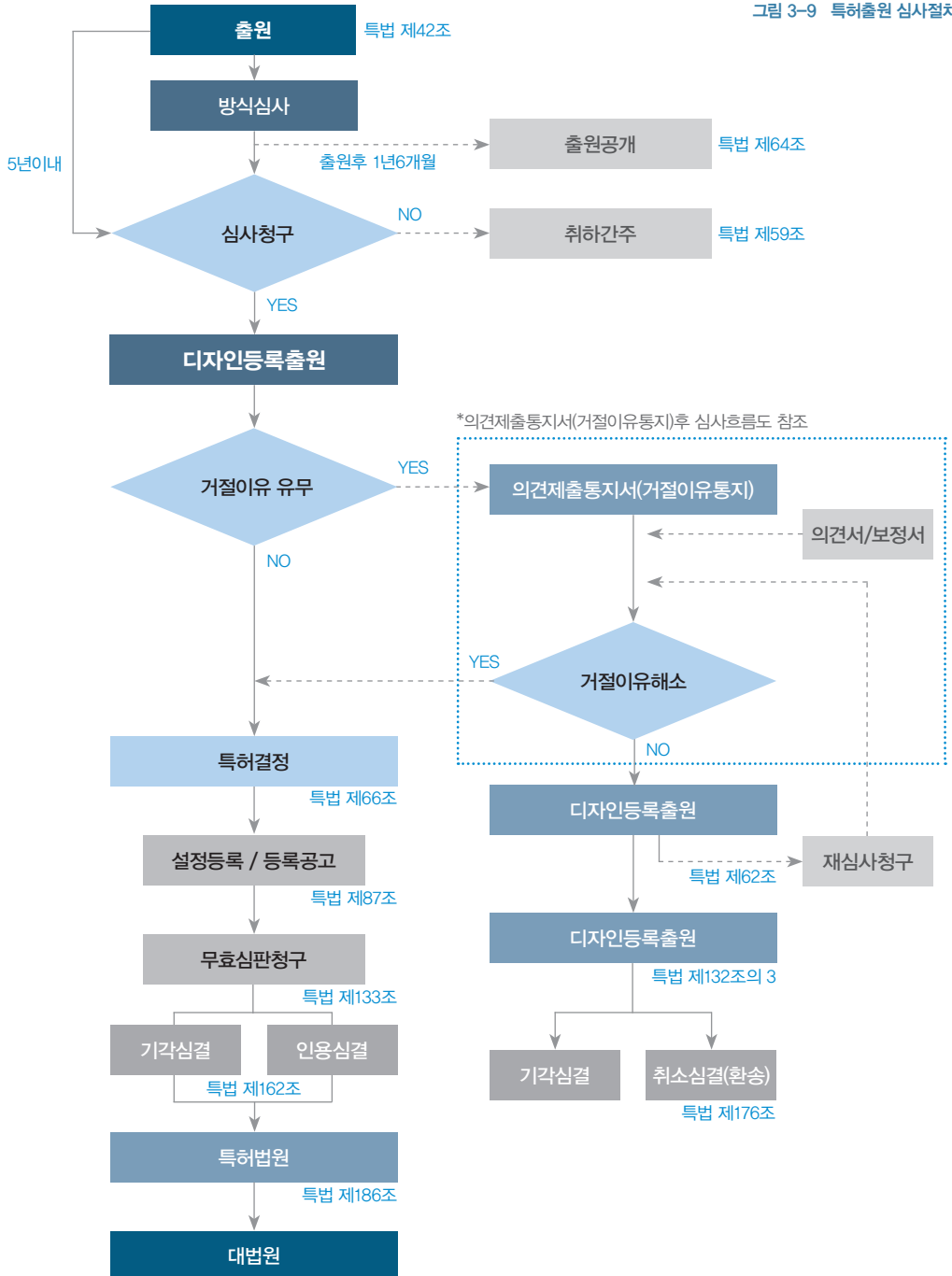


표 3-5 권리비교표

구분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행위방지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출원~권리화 소요시간	약 8개월	10~12개월	창작과 동시에 보호	주지성 획득시	약 2.6년
보호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부등록사유 해당하지 않음 (식별력/ 타인권리저촉)	창작성 (주관적)	국내에서 주지성 획득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권리존속 기간	등록일~15년	등록일~10년 (갱신/반영구)	창작자 사망 후 50년	주지성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출원일~20년 (출원일~10년)
보호범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 베른협약 가맹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등록기관	특허청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특허청

### 3.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 산정을 위해 침해물의 생산 판매 루트를 확인하고, 수입, 제조, 판매, 사용 등 디자인 실시의 각 단계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해물의 판매량, 가격, 원가, 이익 등을 조사하며, 동종업자나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소송 절차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4. 전문가 상담

지재권 침해 건에 대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침해주장을 하리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어 침해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재권 침해여부는 등록권리와 침해품 사진 등의 자료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5. 경고장 발송

#### 가. 경고장의 내용

지재권이 침해 된 경우 침해 문제를 간략히 해결하기 위하여 침해자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고는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속히 중지시키고 지속적인 침해 시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 경고시 유의점

경고를 할 때에는 통상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보통 일정 사항을 기재한 경고장을 작성합니다. 경고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는데, 내용증명우편은 동일한 내용을 3부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송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내용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도

내용증명우편송달은 반드시 하셔야 법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권리 내용(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등 첨부),

상대방의 침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한편 침해품의

처리 방법 및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다. 경고의 법적 효과

경고 자체는 특별한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협의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정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침해의 수습책의 하나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해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할 때 경고장을 보낸 사실 자체가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 경고장 발송 이후 절차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경고 등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침해를 중지하지 않거나, 협상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등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 또는 형사적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제소 및 형사고소

소송은 분쟁이므로 소송 제기 시에 변호사, 변리사 및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침해자의 거주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제소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로는 침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 제재로는 침해중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소하게 됩니다.

#### 나. 분쟁조정신청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특허청 또는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Ⅶ. 디자인 분쟁사례

### 1. 독창적으로 창작하였더라도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일반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음을 요건으로 합니다(신규성).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고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출원일 6개월 이전에 공개된 경우라면 출원시에 이러한 사항을 표시하고 공개된 매체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등록거절, 등록무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응용미술저작물이라도 하여도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경우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과 일체를 이루고 공업적으로 양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도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파리크라상 포장용기' 무효심판 심결

청구인 씨제이푸드빌과 파리크라상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2010.07.30)

블로그에 먼저 게시된 이미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해당자료를 제출한 청구인(씨제이푸드빌)이 심결에서 승소함  
 심판번호 : 2010당596 판결  
<http://www.designmap.or.kr/ip/1pFIFrD.jsp?p=221&x=3>

그림 3-10 케이크 포장용기 디자인 분쟁

###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누○○○와 한○○○○의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2004.7.22)

원고의 히딩크 넥타이 디자인  
 누○○○



피고의 넥타이 디자인  
 한○○○○



원고가 분쟁에서 승소함.  
 심판번호 : 2003도7572 판결  
<http://www.designmap.or.kr/ip/1pFIFrD.jsp?p=231&x=2>

그림 3-11 히딩크 넥타이 디자인 분쟁

3.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공지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경우

디자인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을 전체로 비교해 공지되어 있고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요소에 관한 부분은 권리자에게만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유사판단에서 이를 제외하고 독창성이 있는 부분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디자인과 입체상표가 상호 유사한 경우에도

디자인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  
 디자인 침해주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권 등록에 대한 무효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디자인 관련 자료들만 검색하게 되는데, 입체상표, 특허/실용실안공보에 있는 도면 및 견본과 비교하여 무효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전시회, 박람회 자료,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 등이 유효한 무효자료가 됩니다.

본 내용은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위원이신 최효선 변리사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대표변리사 최효선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hschoi@fastez.com)

**특허심판원, ‘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주)아모레퍼시픽과 (주)△△△△의 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적극적) 심판 (2009.09.30)



해당자료를 제출한 피청구인(주)△△△△이 심결에서 승소함  
 심판번호 : 2008당3934 판결  
<http://www.designmap.or.kr/ipf/pFIFrD.jsp?p=246&x=1>

그림 3-12 화장품 용기 디자인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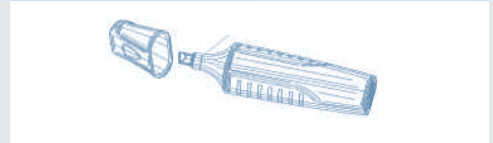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주의 결정  
 (2006.08.24)

청구인 : Schwan Stabilo 독일특허청(GE) 30045470.8



피청구인 : Ningbo Beifa Group 중국특허청 2005300039037



청구인이 분쟁에서 승소함.  
 심판번호 : ICD 000002426  
<http://www.designmap.or.kr/ipf/pFIFrD.jsp?p=173&x=7>

그림 3-13 필기구 등록디자인 분쟁



## 2012 디자인 법률자문·분쟁조정 사례집

본 사례집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 제작한  
「2012 디자인 법률자문·분쟁조정 사례집」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2013년 2월 인쇄  
2013년 2월 발행

발행인 :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김성천 한국디자인기업협회장  
편집자문위원 : 박태열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기획 및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윤집, 김원중, 손성호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임동원, 임정호, 김현아  
발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Tel 031-780-2104)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110-12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3층, Tel 02-3445-2313)